



KAIST

교원창업 가이드

FACULTY STARTUP
GUIDE BOOK



1. 교원창업 정의 (창업규정 제2조)



교원이 재직 또는 휴직 중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단, 과학기술원 근무 이전의 창업기업이라도 동일 조건을 갖추고 창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원창업으로 적용

- ① 본인이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 ② 본인 또는 제3자가 설립하는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거나 투자자를 제외한 최대주주인 경우
- * 자신 또는 타인이 개발한 기술 및 노하우와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 제3조의 「지식재산권」을 포함

교원창업 외 창업의 유형

- 출자 및 연구소기업** : 카이스트의 보유자산 중 기술, 노하우,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통하여 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학교 지분이 10% 이상 확보된 회사(「출자 및 연구소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출자 의뢰)
- 일반창업** : 「교원창업 정의」에 제시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창업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교원 겸직근무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겸직근무 신청 및 승인)

2. 교원창업의 자격 (창업규정 제6조)



- 과학기술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
- 3년 미만의 근속 교원으로서 창업시 과학기술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자
- 과학기술원 임용 전 창업자가 임용 후 창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교원
- 일반창업을 한 교원으로서 해당 기술 또는 향후 개발할 기술이 과학기술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술 사업화위원회(기술가치창출원)의 검토를 받은 경우

3. 교원창업 절차

교원창업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약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1. 교원창업 기본 절차



3-2. 임용 전 창업자의 교원창업 신청 (창업규정 제13조)

- 과학기술원 임용 전 창업한 기업이 교원창업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창업원(창업지원센터)에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제출을 통해 신고
 - 학과(부) 인사심의 이전에 창업위원회 승인 필요

3-3. 일반창업의 교원창업으로의 전환 신청 (창업규정 제6조, 제7조)

- 일반창업을 교원창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원(창업지원센터)로 교원창업 신청
 - 학과(부) 인사심의 이전에 기술사업화위원회(기술가치창출원) 검토 필요

4. 교원창업 겸직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



겸직

(창업규정 제10조, 제11조)

- 최초 신청 시 2년 이내 창업겸직 가능
- 겸직연장 시 학과(부) 교원인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학부총장의 승인 필요
- 겸직 종료 2개월 이전에 소속학과(부)에 겸직 연장 신청
- 승인받은 겸직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 교무처장 협조, 교학부총장의 승인 필요
- 교원은 2개 기업 이내에서 동시에 창업겸직이 가능하며, 두 번째 창업기업 근무에 따른 겸직급여 등 겸직조건은 최초 설립한 창업기업의 겸직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

휴직

(창업규정 제10조)

- 최초 신청 시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포함) 이내 창업휴직 가능
- 휴직 연장 시 학과(부) 교원인사심의회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휴직 종료 2개월 이전에 소속학과(부)에 휴직 연장 신청

복무

(창업규정 제10조, 제11조)

- 창업겸직 기간 중 신청 1회당 1년 이내로 강의면제 신청 가능(별도 신청)
- 강의면제 신청 시 학과(부)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 학과(부)장의 추천, 단과대학장의 검토, 교무처장의 협조 및 교학부총장의 승인 필요
- 창업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창업자는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분야와 유사할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연구 분야에 참여

보수

(창업규정 제12조)

-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한 교원이 강의면제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급여액을 지급(정액급 연동항목도 이에 준함)

겸직 1년차	겸직 2~3년차	겸직 4년차부터	강의면제 미신청
정액급 100%	정액급 70%	정액급 50%	해당없음

5. 교원창업자의 의무



임용전후 창업자의 신고 등

(창업규정 제13조)

- 과학기술원 임용 전 창업한 교원이 교원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창업원(창업지원센터)에 신고
 -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임용 후 창업자는 창업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창업하여야 함. 사적으로 과학기술원의 기술을 유용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 가능하며, 사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취득한 이득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보유출 금지

(창업규정 제14조)

- 창업자는 창업대상 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과학기술원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과학기술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 금지. 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

변경 신고

(창업규정 제18조)

- 창업기업에 아래 변경사유 발생 시 창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창업원(창업지원센터)에 신고
 -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 주요사업 내용 변경
 - 법인 전환
 -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 교원 창업자는 당해 기업의 기업현황 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창업원(창업지원센터)에 제출

6. 기술실시계약 (창업규정 제9조)



- 교원창업 기업은 법인설립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규정」에 따라 창업대상 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과학기술원과 체결
- 창업기업이 창업대상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원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에게 양도,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부여

[교원창업 기업 기술실시계약 가이드라인]

- 교원창업 기술실시 계약은 아래 방안 중 KAIST(기술가치창출원)와 교원창업 기업이 협의하여 정함
 - ① 특허비용 및 창업기업 지분 납부 방식
 - ② 선급기술료 · 경상기술료 · 조건부기술료로 계약하는 방식
 - ③ 이 외의 요건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창업 활성화 취지 및 KAIST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업화위원회(기술가치창출원)의 심의 및 의견을 통하여 정할 수 있음

* 교원창업 기업 기술실시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원 홈페이지 교원창업 가이드 PDF 버전 참조

7. 교원창업에 대한 지원 (창업규정 제15조 등)



복무

-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한 교원은 강의면제 신청 가능

연구장비 활용

- 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시설의 사용 등 기타 창업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비용 등은 교원창업기업이 부담하되, 비용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원 내부인 기준 적용)

창업보육공간 활용

- 창업보육 전용공간 우선 입주 및 사용료 혜택
 - 창업보육공간 입주 시 공모 및 심사평가 예외 적용
 - 창업보육공간 입주 비용 감면 적용
 - 유휴 공간이 없을 경우 주소지로 활용할 수 있는 Virtual Office 입주 가능

창업 법률상담

- KAIST 교원 및 학생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내용** 1) 창업관련 법률 기초
2)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일반 지식
3) 협상 초기단계의 계약서 검토 자문 수준에서 상담 가능
-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0:00~16:00
- 예약방법** KAIST Portal 통합예약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 장소** 교육지원동(W8) 3층 창업상담실(301호)
- 상담인력** 창업원 초빙교수(변호사)

창업원 지원 프로그램

1 Lab 1 Startup

창업 할거면

교원창업 Process

KEP (KAIST Entrepreneurial Partnership)

Lab Startup KAIST

관심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할때 **창업 Workshop**

함께 이야기할까 **Spark Lunch Talk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창업상담서비스 with 변호사, 회계사 등**

창업 DNA 알아보기 **창업 자가진단 & 팀빌딩 진단**

다함께 즐겨요 **Startup Day, KAIST Startup Awards**

* 교원창업 기업 기술실시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원 홈페이지 교원창업 가이드 PDF 버전 참조

8. 지식재산권 및 연구과제



창업기업의 합병 및 매각

(창업규정 제17조)

-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진행 절차
 - ①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양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창업기업의 합병, 매각, 양도 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원의 사전 동의 필요
 - ② 과학기술원은 지식재산권의 사용 조건, 대가, 기간 등을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창업기업에 통보
 - * 과학기술원 소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규정을 준용

지식재산권 처리

(창업규정 제19조)

-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창업자가 창업기업에 겸직하여 개발한 발명은 과학기술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처리
 - 단, 해당 발명이 과학기술원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고, 창업기업의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을 사용하여 완성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원과 창업기업의 공동소유 가능

연구과제의 이관

(창업규정 제21조)

- 과학기술원 또는 창업기업은 수행하던 위탁연구과제를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서로 상대방에게 과제 수행기관의 지위 승계 가능. 연구비 이전 등 과제 승계에 따른 법률 관계는 승계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고, 승계 계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연구과제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업무관리규정」에 따라 처리

9. 참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법인설립 업무처리 및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startbiz.go.kr>)

연구개발특구 입주 절차(공장 등록 시)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특구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 절차 이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관리서비스 홈페이지 (<https://minwon.innopolis.or.kr>)

10. 담당자 현황

행정지원 담당자

업무	부서명	내선번호
교원창업 신청	창업지원센터	6491 / 6494
창업대상 기술검토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	2982
기술실시 계약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	2973 / 2974
창업공간 지원	창업보육센터	4734 / 4736
출자 및 연구소기업	산학협력센터	6421

학과(부) 인사담당자

단과대학	학과(부)	내선번호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2502
	수리과학과	2799
	화학과	2804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	2605
	의과학대학원	8153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8202
	항공우주공학과	3704
	전기및전자공학부	3405
	전산학부	3502
	건설및환경공학과	3604
	바이오및뇌공학과	4304
	산업디자인학과	4502
	산업및시스템공학과	3102
	생명화학공학과	3904
	신소재공학과	3302
	원자력및양자공학과	3899
	조천식모빌리티대학원	1253
	김재철SI대학원	1803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문화기술대학원		2902
문술미래전략대학원		4022
과학기술정책대학원		4843
경영대학	경영공학부	*1-3601
	기술경영학부	6301
	융합인재학부	7052

